

반드시 읽으십시오

韓国語

신입생 및 신입생의 보호자 여러분께

고등학교 등의 취학지원금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취학지원금이란 다음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를 국가가 학생을 대신하여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입생은 4월과 7월 2회, 신청수속이 필요합니다). 생활보호 세대나 편부모가정 이외의 분도 대상이 됩니다. 대여형 장학금과는 달리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대상자의 요건

- 보호자 등(친권자)의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근거한 「소득할주민세액」이 304,200엔 미만인 분. 도·도·후·켄의 주민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 소득이 아니면 「소득할주민세액」의 합계액이 해당됩니다.
-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 3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분.
- 정시제·통시제 과정의 경우는 48개월입니다. 국립·공립·사립 모두 해당합니다.
- 신청서와 과세증명서 등을 기한 내에 학교에 제출한 분.
- 과세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4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취학지원금의 지급에는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7월 상순(예정)에 학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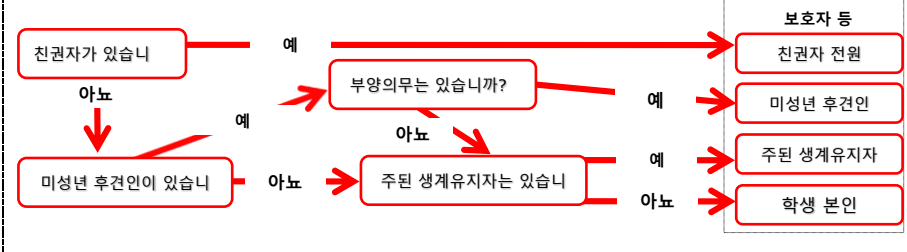
※ 신청할 때는 신청서(별지)의「기입상의 주의」 및「유의사항」을 충분히 읽고난 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확인의 대상이 되는 보호자 등은 원칙적으로 법률상 친권을 가진 자입니다. 만일 보호자 등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신청·수급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경우는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한 수단으로 취학지원금을 수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제출기한 2016(H28)년 4월 일 ()

大阪府立●●高等学校

(●●●●) - ●●●● - ●●●●

과세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분



과세증명서 등이란?

금번 신청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에 근거한「소득할주민세액」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중 어느 것이든 하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등(친권자) 전원 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생활보호 세대인 분】 생활보호 수급증명서의 원본(복사본은 불가합니다).
시·초·손의 생활보호담당 창구에서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 필요합니다.
금번 신청은 2015(H27)년 1월 1일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 ② 【샐러리맨 세대인 분】 주민세 등 특별징수 세액 결정 통지서(납세의무자용)의 복사본
샐러리맨인 분 등에게 작년 5-6월 경, 근무처로부터 배부된 것입니다.
근무처 이외에서도 수입이 있어서 세액이 변경되신 분이나 통지서를 분실하신 경우는 ④가 필요합니다. A3용지 등에 모든 내용이 한 장의 용지에 들어가도록 복사하십시오.
- ③ 【자영업 세대인 분】 시·초·손민세·도·도·후·켄민세 납세통지서의 복사본
자영업업을 하시는 분 등에게 시·초·손으로부터 송부됩니다. 분실하신 경우는 ④가 필요합니다.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는 통지서는 전 페이지를 원본 크기로 복사하십시오.
- ④ 【①-③이 없는 분】 주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의 원본(모든 사항이 기재된 것)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복사본은 불가합니다.
시·초·손의 세증명서 창구에서 발행됩니다. 발행은 유료입니다.

주의사항

1. 원천징수표나 확정신고서 등은 「과세증명서 등」이 되지 않습니다.
2. 보호자의 한 분(A)이 다른 보호자(B)의 배우자공제 대상자로, B의 소득할주민세액이 3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A의 과세증명서 등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특별공제의 대상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